

『HiFi Plus 외화적립예금』 특약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HiFi Plus 외화적립예금 (구 외환은행)</p> <p>제 1 조 (적용범위) 『HiFi Plus 외화적립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 2 조~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및 태국바트화로 총 11개 통화입니다</p> <p>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 (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p> <p>제 8 조(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법에 의한 인출을 원칙으로 하며, 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특정납입금의 인출이나 후입선출방법에 의한 인출도 가능합니다. ③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9 조~제 11 조 (기재생략)</p> <p>신설</p>	<p>상품명: HiFi Plus 외화적립예금</p> <p>제 1 조 (적용범위) 『HiFi Plus 외화적립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 2 조~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덴마크크로네화, 노르웨이크로네화, 스웨덴크로나화, 쿠웨이트디나르화 및 중국위안화로 총 15개 통화입니다.</p> <p>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 (적용이율) 이 예금의 이율은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p> <p>제 8 조(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예금은 선입선출방법을 통해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9 조~ 제 11 조 (기재생략)</p> <p>제12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 외환은행) 문구삭제</p> <p>예치통화 확대 (11개 -> 15개)</p> <p>적용이율 명칭변경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 -> 외화정기예금이율)</p> <p>분할인출 선입선출법으로 일원화</p> <p>적용이율 명칭변경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 -> 외화정기예금이율)</p> <p>제 12조(약관의 변경)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Wise-FX 적립식외화예금』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Wise-FX 적립식외화예금』</p> <p>제 1 조 이 특약은 고객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하나 Wise-FX 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환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기재생략)</p> <p>제 3 조 예치통화 이 예금은 USD, EUR, JPY, GBP,CHF, AUD, CAD, NZD 통화로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p> <p>제 3 조~ 제 10 조 (기재생략)</p> <p>제 11 조 만기 후 이자 이 예금의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예금 신규일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p> <p>제 12 조 ~ 제 13 조 (기재생략)</p> <p>제 14 조 기타 위 특약 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 조 제 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p>	<p>상품명: 『Wise-FX 적립식외화예금』</p> <p>제 1 조 이 특약은 고객과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Wise-FX 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기재생략)</p> <p>제 3 조 예치통화 이 예금은 15개 통화 USD, EUR, JPY, GBP,CHF, AUD, CAD, NZD, HKD, SGD, SEK, DKK, NOK, KWD, CNY 로 합니다.</p> <p>제 3 조 ~ 제 10 조 (기재생략)</p> <p>제 11 조 만기 후 이자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12 조 ~ 제 13 조 (기재생략)</p> <p>제 14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 하나은행) 삭제</p> <p>예치통화 확대 (8개 -> 15개 통화)</p> <p>만기 후 이자 지급방법 변경</p> <p>약관의 변경 통지내역을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준용 규정으로 변경</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더 와이드(The Wide) 외화적금』특약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7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조(적용범위) 『더 와이드(The Wide)외화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적용범위) 『더 와이드(The Wide)외화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은행명 삭제
제2조~제6조 (기재생략)	제2조~제6조 (기재생략)	
제7조 (적용이율) ①~② (기재생략) ③ 가입기간 중 본인명의로 다음의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연 0.1%의 이율을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1. USD 500상당액 이상 송금한 경우 2. USD 200상당액 이상 환전한 경우 3. 외화기프트(GIFT)(구 외환은행)을 USD 100 상당액 이상 발행한 경우(양도 제외) 4. 유학생송금 지정거래가 등록된 경우 ④ (기재생략)	제7조 (적용이율) ①~② (기재생략) ③ 가입기간 중 본인명의로 다음의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연 0.1%의 이율을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1. USD 500상당액 이상 송금한 경우 2. USD 200상당액 이상 환전한 경우 3. 유학생송금 지정거래가 등록된 경우 ④ (기재생략)	외화기프트 서비스 중단으로 외화기프트 문항 삭제
제8조 (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적금은 선입선출방법에 의한 인출을 원칙으로 하며, 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후입선출방법에 의한 인출도 가능합니다. ③ (기재생략)	제8조 (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적금은 선입선출방법을 통해 분할 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기재생략)	분할인출 ‘선입선출법’로 단일화
제9조~제11조 (기재생략)	제9조~제11조 (기재생략)	
제12조(우대서비스) ①~③ (기재생략) ④ 이 적금의 만기자금을 영업점을 통해 환전하여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의 예스큰기쁨예금(구 외환은행)을 가입하는 경우 100% 우대된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12조(우대서비스) ①~③ (기재생략) ④ 문구 삭제	예스큰기쁨예금 폐지로 인해 문구 삭제
신설	제13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약관의 변경 신규

2.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p> <p>제 1 조 이 특약은 고객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하나 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환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계좌간자동이체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제 3 조 (기재 생략)</p> <p>제 4 조 예치 통화 이 예금은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HKD, SGD 통화로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p> <p>제 5 조~ 제 10 조 (기재 생략)</p> <p>제 11 조 만기 후 이자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이 예금 신규일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12 조 ① 기재생략 ② 고객은 ‘이체기준액’을 ‘외화기준’ 또는 ‘원화기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최소 이체기준액은 미화기준 100 불 또는 원화기준 100,000 원 이상으로 합니다. ③~⑦ 기재생략</p> <p>제 13 조 (기재생략)</p> <p>제 14 조 기타 이 특약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 조 제 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p>	<p>상품명: 모아드림 적립식 외화예금</p> <p>제 1 조 이 특약은 고객과 (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계좌간자동이체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제 3 조 (기재 생략)</p> <p>제 4 조 예치 통화 이 예금은 15개국 통화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HKD, SGD, SEK, DKK, NOK, KWD, CNY 로 합니다.</p> <p>제 5 조~ 제 10 조 (기재 생략)</p> <p>제 11 조 만기 후 이자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 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12 조 ① 기재생략 ② 고객은 ‘이체기준액’을 ‘외화기준’ 또는 ‘원화기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단, 최소 이체기준액은 미화기준 10 불 또는 원화기준 10,000 원 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 ③~⑦ 기재생략</p> <p>제 13 조 (기재생략)</p> <p>제14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 및 (구 하나은행)문구 삭제</p> <p>예치 통화 확대 (기존 10개 -> 15개)</p> <p>만기 후 이자 적용방법 변경</p> <p>이체기준금액 변경 (미화 100불 -> 10불) (원화 100,000원 -> 원화 10,000원)</p> <p>약관의 변경 내용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모아모아 외화적금』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 (구 하나은행)</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 모아모아 외화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거치식예금약관(구 하나은행)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 이자 ①~② (기재 생략) ③ 만기일 이후 고객이 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 신규일에 영업점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p> <p>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 ①~③ (기재생략)</p> <p>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구 하나은행)을 따릅니다.</p> <p>제 8 조 우대서비스 변경 위 수수료 및 기타 우대서비스내용 및 대상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p>	<p>상품명: 모아모아 외화적금</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모아모아 외화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 이자 ①~② (기재 생략) ③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납입 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 일수에 가입할 당시 적용 이율의 3/10 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 ①~③ (기재생략)</p> <p>④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을 따릅니다.</p> <p>제 8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 및 (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만기후 이자 지급 방법 변경</p> <p>(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약관의 변경 문구 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특약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 (구 외환은행)</p> <p>제 1 조 (적용범위)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 2 조~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및 싱가포르달러화로 총 10개 통화입니다.</p> <p>제 6 조(기재생략)</p> <p>제 7 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기재생략) ③ 가입기간 중 본인명의로 다음의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외환거래 종류별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최대 연 0.2% P의 이율을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예금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4 (기재생략)</p> <p>5. 외화기프트(GIFT)를 USD100 상당액 이상 발행(양도 제외)한 경우 연 0.1%p</p> <p>제 8 조(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법에 의한 인출을 원칙으로 하며, 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후입선출 방법에 의한 인출도 가능합니다. ③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9 조~제 11 조 (기재생략)</p> <p>신설</p>	<p>상품명: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p> <p>제 1 조 (적용범위) 「스마트팝콘 외화적립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 2 조~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덴마크크로네화, 노르웨이크로네화, 스웨덴크로나화, 쿠웨이트디나르화 및 중국위안화로 총 15개 통화입니다.</p> <p>제 6 조(기재생략)</p> <p>제 7 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기재생략) ③ 가입기간 중 본인명의로 다음의 외환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외환거래 종류별 우대이율을 합산하여 최대 연 0.2% P의 이율을 추가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예금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4 (기재생략)</p> <p>5 (문구 삭제)</p> <p>제 8 조(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예금은 선입선출 방법을 통해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분할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는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예치기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p> <p>제 9 조~제 11 조 (기재생략)</p> <p>제 12 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외환은행) 문구삭제</p> <p>예치통화 확대 (10개 -> 15개)</p> <p>적용이율 명칭 변경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 -> 외화정기예금이율)</p> <p>3항5호 문구 삭제</p> <p>분할인출방식 선입선출법</p> <p>적용이율 명칭변경 (자유적립외화예금이율 -> 외화정기예금이율)</p> <p>약관의 변경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자녀사랑 외화로유학적금 특약」개정 대비표

1. 개정시행일: 2016.6.7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특약」(구 외환은행)	「자녀사랑 외화로유학적금 특약」	상품명 변경
제1조 (적용범위) 「자녀사랑 외화로유학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구 외환은행)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 (적용범위) 「자녀사랑 외화로유학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항은 외화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소멸법인명 삭제
제2조-제7조 (기재생략)	제2조~제7조(기재생략)	
제8조 (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적금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인출을 원칙으로 하며, 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후입선출법에 의한 인출도 가능합니다. ③ (기재생략)	제8조 (분할인출) ① (기재생략) ② 이 적금은 선입선출 방법을 통해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③ (기재생략)	중도인출 단일화
제9조~제 11조 (기재생략)	제9조~제 11조 (기재생략)	
신설	제12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여부 : 비적용

『Hi-Tech 외화정기예금』 특약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Hi-Tech 외화정기예금 (구 외환은행)</p> <p>제 1 조 (적용범위) 『Hi-Tech 외화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및 뉴질랜드달러화로 총 7개 통화입니다.</p> <p>제 6 조~제 7 조 (기재생략)</p> <p>제 8 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고시한 Hi-Tech 외화정기예금이율의 가입기간 해당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동이율 지급식은 예금가입일 및 예금 가입일로부터 매 3 개월 경과 해당일(해당일이 휴일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마다 변동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기재생략) ③ 변동이율은 해당통화의 3 개월 Libor 에 가입 일자의 가입기간별 Spread 를 더한 이율이 적용 됩니다. ④ 제 3 항의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는 영국 런던은행간에 거래되는 이율을 말 하며 매 영업일마다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합니다. ⑤ 변동이율 지급식 예금의 경우 변동이율 적용 시 마다 예금주가 미리 신고한 통지수단(e-mail 또는 SMS)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원하지 않은 경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p> <p>제 9 조~ 제 11 조 (기재생략)</p> <p>신설</p>	<p>상품명: Hi-Tech 외화정기예금</p> <p>제 1 조 (적용범위) 『Hi-Tech 외화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제 4 조 (기재생략)</p> <p>제 5 조(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덴마크크로네화, 노르웨이크로네화, 스웨덴크로나화, 쿠웨이트디나르화 및 중국위안화로 총 15개 통화입니다.</p> <p>제 6 조~제 7 조 (기재생략)</p> <p>제 8 조(적용이율) ① 이 예금의 이율은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가입기간 해당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변동이율 지급식은 예금가입일 및 예금 가입일로부터 매 3 개월 해당일(해당일이 휴일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마다 해당일에 영업점, 홈페이지에 고시되는 3 개월 예치 외화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기재생략) ③ 변동이율 지급식 예금의 경우 변동이율 적용 시 마다 예금주가 미리 신고한 통지수단(e-mail 또는 SMS)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원하지 않은 경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p> <p>제 9 조~ 제 11 조 (기재생략)</p> <p>제12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 외환은행) 문구삭제</p> <p>예치통화 확대 (7개 -> 15개)</p> <p>적용이율 명칭변경 (Hi-Tech외화정기예금이율 -> 외화정기예금이율)</p> <p>변경 전 ③, ④항목 삭제</p> <p>제12조 (약관의 변경)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구 하나은행)</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거치식 예금약관(구 하나은행)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5 조 (기재생략)</p> <p>제 6 조 「금리연동형」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지급식이 있습니다.</p> <p>「금리연동형」의 이율은 예금당시 고객의 지정에 의해 예금일 및 예금일부터 매 1개 월 용당일 또는 매 3개월 용당일을 이율결정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단, 용당일이 휴일인 경우는 용당일에 이온 첫 영업일을 용당일로 하고, 용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용당일로 합니다.</p> <p>제 7 조 ~ 제 8 조 (기재생략)</p> <p>신설</p>	<p>상품명: 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외화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및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5 조 (기재생략)</p> <p>제 6 조 「금리연동형」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지급식이 있습니다.</p> <p>「금리연동형」의 이율은 예금당시 고객의 지정에 의해 예금일 및 예금일부터 매 1개 월 용당일 또는 매 3개월 용당일을 이율결정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매 이율변동주기 도래일이 휴일 또는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적용하며,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의 이율로 합니다.</p> <p>제 7 조 ~ 제 8 조 (기재생략)</p> <p>제 9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 및 (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문구정정 만기가 휴일인 경우 그 다음영업일 이율적용 ->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이율 적용</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특약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2016.6.7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적용범위)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2조~제5조 (기재생략)</p> <p>제6조(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스웨덴크로나화, 노르웨이크로네화, 덴마크크로네화 및 쿠웨이트디나르화로 총 14개 통화입니다.</p> <p>제7조~제12조 (기재생략)</p> <p>신설</p>	<p>제1조(적용범위) 『외화공동구매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2조~제5조 (기재생략)</p> <p>제6조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스웨덴크로나화, 노르웨이크로네화, 덴마크크로네화, 쿠웨이트디나르화 및 중국위안화로 총 15개 통화입니다.</p> <p>제7조~제12조 (기재생략)</p> <p>제13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은행명 삭제</p> <p>중국 위안화 추가 (14개 ->15개)</p> <p>약관의 변경 문구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구하나은행)</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이하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가능통화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통화는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로 합니다.</p> <p>제 5 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000 상당금액 이상으로 한다.</p> <p>제 6 조 ~ 제 12 조 (기재생략)</p> <p>제 13 조 기타 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 조 제 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p>	<p>상품명: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외화 양도성예금증서(통장식)』 (이하 “이 등록 발행 양도성예금증서”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 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가능통화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통화는 15 개 통화로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HKD, SGD, DKK, NOK, SEK, KWD, CNY 로 합니다.</p> <p>제 5 조 가입금액 이 등록발행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USD 5,000 상당금액이상이며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p> <p>제 6 조 ~ 제 12 조 (기재생략)</p> <p>제 13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 및 (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가능통화 확대 (8개통화 -> 15개통화)</p> <p>문구 추가 “최고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구추가</p> <p>약관의 변경 표현 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장기우대 외화정기예금』특약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2016.6.7

2.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조(적용범위) 『장기우대 외화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제1조(적용범위) 『장기우대 외화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합니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은행명 삭제</p>
<p>제2조~제4조 (기재생략)</p>	<p>제2조~제4조 (기재생략)</p>	
<p>제5조 (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스웨덴크로나화, 노르웨이크로네화, 덴마크크로네화 및 쿠웨이트디나르화로 총 14개 통화입니다.</p>	<p>제5조 (예치통화) 이 예금의 예치통화는 미국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영국파운드화, 스위스프랑화, 캐나다달러화, 호주달러화, 뉴질랜드달러화, 홍콩달러화, 싱가포르달러화, 스웨덴크로나화, 노르웨이크로네화, 덴마크크로네화, 쿠웨이트디나르화 및 중국위안화로 총 15개 통화입니다.</p>	<p>중국 위안화 추가 (14개 ->15개 확대)</p>
<p>제6조-제13조 (기재생략)</p>	<p>제6조-제13조 (기재생략)</p>	
<p>신설</p>	<p>제14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비적용

「글로벌페이 전용통장」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글로벌페이 전용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8 조 (기재생략)</p> <p>제 9 조 (변경사항) 위 특약의 시행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 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 조 제 2 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이 특약은 고객과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글로벌페이 전용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거래에 적용하며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8 조 (기재생략)</p> <p>제9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약관의 변경-준용규정으로 변경</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 다통화 예금』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외화 다통화 예금 특약(구 하나은행)</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 외화 다통화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가능통화 이 예금의 입금 가능통화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CNY 로 합니다.</p> <p>제 5 조~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 위 특약의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0 조 제 2 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p>	<p>상품명: 외화 다통화 예금 특약</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외화 다통화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가능통화 이 예금의 입금 가능통화는 27개 통화로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로 합니다.</p> <p>제 5 조~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 및 (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가능통화 확대 (11개 -> 27개)</p> <p>약관의 변경 표현 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외화서비스 하나통장』(구 하나은행)</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외화서비스 하나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환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하나 외화수퍼플러스 특약(구 하나은행)』, 『해외 송금자동이체 거래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입금가능통화 이 예금의 입금가능통화는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로 합니다.</p> <p>제 5 조 ~ 제 8 조 (기재생략)</p> <p>제 9 조 기타 위 특약사항은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0 조 제 2 각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p>	<p>상품명: 『외화서비스 하나통장』</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외화서비스 하나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수퍼플러스 특약』, 『해외 송금자동이체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입금가능통화 이 예금의 입금가능통화는 27 개 통화로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THB, IDR, SAR, AED, KWD, BHD, RUB, ZAR, HUF, PLN, MXN, CNY, TRY, CZK 로 합니다.</p> <p>제 5 조 ~ 제 8 조 (기재생략)</p> <p>제 9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 및 (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입금가능통화 확대 (8개 ->27개통화)</p> <p>약관의 변경 표현 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수퍼플러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외화수퍼플러스</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 외화수퍼플러스(구 하나은행)』(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가능통화 이 예금의 입금 가능통화는 USD, EUR, JPY, GBP, CHF, AUD, CAD, NZD, CNY 로 합니다.</p> <p>제 5 조 ~ 제 7 조 (기재생략)</p> <p>제 8 조 변경사항 위 특약의 변경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1개월 전 1개월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합니다.</p>	<p>상품명: 외화수퍼플러스</p> <p>제 1 조 약관의 적용 『외화수퍼플러스』(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2 조 ~ 제 3 조 (기재생략)</p> <p>제 4 조 가능통화 이 예금의 입금 가능통화는 15개통화로 USD, JPY, EUR, GBP, CHF, CAD, AUD, NZD, HKD, SGD, SEK, DKK, NOK, KWD, CNY 로 합니다.</p> <p>제 5 조 ~ 제 7 조 (기재생략)</p> <p>제 8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 하나은행) 문구삭제</p> <p>가능통화 확대 (9개통화 -> 15개 통화)</p> <p>약관의 변경 표현 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목돈을 불리는 통장(외화용)』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목돈을 불리는 통장(외화용)(구 하나은행)</p> <p>제 1 조 약관의 적용</p> <p>목돈을 불리는 통장(외화용)”(이하 “ 이 통장”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한다.</p> <p>제 2 조 ~ 제 5 조 (기재생략)</p> <p>신설</p>	<p>상품명: 목돈을 불리는 통장(외화용)</p> <p>제 1 조 약관의 적용</p> <p>목돈을 불리는 통장(외화용)”(이하 “ 이 통장”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한다.</p> <p>제 2 조 ~ 제 5 조 (기재생략)</p> <p>제 6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 하나은행) 삭제</p> <p>약관의 변경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국인증권투자 외화예금 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외국인증권투자 외화예금 약관(구 외환은행)</p> <p>제 1 조 ~제 5 조 (기재생략)</p> <p>제 6 조 (약관의 적용) 이 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규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구 외환은행) 및 외국환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상품명: 외국인증권투자 외화예금 약관</p> <p>제 1 조 ~제 5 조 (기재생략)</p> <p>제 6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약관의 적용 문구 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p>2. 하나은행, 웨스턴유니온 또는 그 취급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기타 고객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p> <p>제 8 조 (자료활용)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하나은행과 웨스턴유니온이 신청서상에 표시된 정보를 보관하고 본 송금취결 및 수취거래를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제 9 조(수수료) 이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2. KEB 하나은행, 웨스턴유니온 또는 그 취급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기타 고객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p> <p>제 8 조 (자료활용)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KEB 하나은행과 웨스턴유니온이 신청서상에 표시된 정보를 보관하고 본 송금취결 및 수취거래를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p> <p>제 9 조(수수료) 이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영업점 및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제 10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은행명 변경</p> <p>은행명 변경</p> <p>은행명 변경</p> <p>약관의변경 문구 신설</p>
--	--	--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KEB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구 하나은행)</p> <p>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이하 “이 거래”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 2 조 (약관의 적용) 이 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이 약관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하나은행)”, “외화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하나 휴대폰 문자통지서비스이용약관(구 하나은행)”. “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구 하나은행)”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3 조~제 9 조 (기재생략)</p> <p>제 10 조(해외송금 수수료 및 환율) 1. 이 거래의 해외송금시 송금수수료는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수수료표”를 적용하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재생략</p> <p>제 11 조 (기재생략)</p> <p>제 12 조 (거래정보의 변경) 1. 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의 소정양식에 의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의뢰(변경/해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 2. 기재생략</p> <p>제 13 조~제 16 조 (기재생략)</p> <p>신설</p>	<p>상품명: 『KEB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p> <p>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KEB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이하 “이 거래”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신청인”이라고 합니다)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 2 조 (약관의 적용) 이 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이 약관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외화거래기본약관”, “하나 휴대폰 문자통지서비스이용약관”. “KEB 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 3 조~제 9 조 (기재생략)</p> <p>제 10 조(해외송금 수수료 및 환율) 1. 이 거래의 해외송금시 송금수수료는 “KEB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수수료표”를 적용하며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재생략</p> <p>제 11 조 (기재생략)</p> <p>제 12 조 (거래정보의 변경) 1. 신청인의 사정으로 신청 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은행의 소정양식에 의한 “KEB 하나-웨스턴유니온 자동송금 의뢰(변경/해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익영업일에 발생합니다.</p> <p>제 13 조~제 16 조 (기재생략)</p> <p>제 17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p> <p>은행명 삭제 (구 하나은행) 삭제</p> <p>상품명 변경</p> <p>상품명 변경</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6. 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구 하나은행)</p> <p>제 1 조 (목적)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 거주 또는 유학(예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 이주 유학클럽(Hana Overseas Club)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제공자인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인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다.</p> <p>제 2 조~제 18 조 (기재생략)</p> <p>제 19 조 (약관의 변경) ①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 예정일 직전 1 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 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은행은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거래처가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p> <p>제 20 조 (기재생략)</p> <p>제 21 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 법령, 외국환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및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p> <p><부칙> (기재생략)</p>	<p>상품명: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p> <p>제 1 조 (목적) 하나 해외이주·유학 클럽서비스 약관(이하 ‘약관’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 및 해외에서 근무, 거주 또는 유학(예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인 하나 해외 이주 유학클럽(Hana Overseas Club)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제공자인 KEB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용자인 고객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 것이다.</p> <p>제 2 조~제 18 조 (기재생략)</p> <p>제 19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제 20 조 (기재생략)</p> <p>제 21 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환 법령, 외국환거래 기본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각 서비스를 이용하는 예금 또는 거래별 약관에 따르기로 한다</p> <p><부칙> (기재생략)</p>	<p>상품명 변경</p> <p>은행명 수정 하나은행 -> KEB하나은행</p> <p>(약관의 변경) 문구 수정</p> <p>은행명 삭제 (구 하나은행) 삭제</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하나-ONE 해외송금서비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하나-ONE 해외송금 서비스』(구 하나은행)</p> <p>제 1 조- 제 15 조 (기재생략)</p> <p>제 16 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 법규”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 (구 하나은행)” 이 적용됩니다.</p> <p>신설</p>	<p>상품명: 『하나-ONE 해외송금 서비스』</p> <p>제 1 조- 제 15 조 (기재생략)</p> <p>제 16 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국환거래 법규” 및 “외환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적용됩니다.</p> <p>제 17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 하나은행) 문구 삭제</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해외송금 자동이체』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상품명: 『해외송금 자동이체 거래약관』(구 하나은행) 제 1 조- 제 11 조 (기재생략) 신설	상품명: 『해외송금 자동이체 거래약관』 제 1 조- 제 11 조 (기재생략) 12.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 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상품명 변경 약관의 준용 문구 신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이용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u>「easy-one 외화송금서비스」이용약관 (구 외환은행)</u></p> <p>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송금전용계좌) ① (생략) ② 송금전용계좌는 원화보통예금에 한하며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 ~ ⑤ (생략) ⑥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미만의 금액은 송금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p> <p>제4조~제13조 (생략)</p> <p>제14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외환은행)”,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구 외환은행)” 및 “외국환거래법규”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easy-one 외화송금서비스」이용약관</u></p> <p>제1조 ~ 제2조 (현행과 동일) 제3조 (송금전용계좌) ① (현행과 동일) ② 송금전용계좌는 원화보통예금 및 <u>외화보통예금</u>에 한하며 원화보통예금은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③ ~ ⑤ (현행과 동일) ⑥ 제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당 100,000원미만, <u>외화송금전용계좌에는 건당 미화 100불 상당액 미만의 금액 및 외화현찰을</u>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u>입금액이 50,000원이상인 경우에는</u> 입금할 수 있습니다.</p> <p>제4조~제13조 (현행과 동일)</p> <p>제14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외국환거래법규” 및 은행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p> <p>제1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구 외환은행) 삭제</p> <p>외화보통예금 추가</p> <p>입금액액 명확 화</p> <p>(구 외환은행) 삭제</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Global On-Line서비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Global On-Line」(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 2 조~제 10 조 (기재생략)</p> <p>신설</p>	<p>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Global On-Line」(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간에 서비스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제 2 조~제 10 조 (기재생략)</p> <p>제 11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은행명 변경 한국외환은행 -> 하나은행 변경</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Multi 환율예약 자동송금 서비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Multi 환율예약 자동송금 서비스』(구 외환은행)</p> <p>제 1 조- 제 16 조 (기재생략)</p> <p>제 17 조 (준용규정)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릅니다.</p> <p>신설</p>	<p>상품명: 『Multi 환율예약 자동송금 서비스』</p> <p>제 1 조- 제 16 조 (기재생략)</p> <p>제 17 조 (준용규정)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릅니다.</p> <p>제 18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외환은행 문구 삭제</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Multi 환율예약 자동이체 서비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상품명: 『Multi 환율예약 자동이체 서비스』(구 외환은행) 제 1 조- 제 17 조 (기재생략) 신설	상품명: 『Multi 환율예약 자동이체 서비스』 제 1 조- 제 17 조 (기재생략) 제 18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상품명 변경 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예금 자동대체 서비스 이용 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외화예금 자동대체 서비스」 이용약관</u> (구 외환은행)	<u>「외화예금 자동대체 서비스」 이용 약관</u>	(구 외환은행) 삭제
제1조 ~ 제7조 (생략)	제1조 ~ 제7조 (현행과 동일)	
제8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및 동 업무 세부처리지침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환거래기본약관,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타행환공동망 업무규약 및 동 업무 세부처리지침에 따르기로 합니다.	구 외환은행 삭제
신설	제9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	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p> <p>제1조 ~ 제3조 (생략)</p> <p>제4조 (적용환율)</p> <p>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p> <p>제5조 약관의 적용</p> <p>①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u>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u>, <u>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외환은행)</u>, <u>거치식예금약관(구 외환은행)</u>, <u>적립식예금약관(구 외환은행)</u> 및 외환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p> <p>②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p>	<p>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p> <p>제1조 ~ 제3조 (현행과 동일)</p> <p>제4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p> <p>① <u>외화예금의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로 합니다. 단, 미국달러화를 현찰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할 때의 적용환율은 은행이 고시한 대고객 현찰매입율로 합니다.</u></p> <p>② <u>미국달러화 이외의 외화현찰을 외화예금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u></p> <p>③ <u>미국달러화 현찰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화로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u></p> <p>④ <u>외화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입금한 외화예금을 외화현찰로 인출할 때에는 은행이 계산근거를 명시하여 청구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u></p> <p>⑤ <u>은행은 상기 ②~④항과 관련한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합니다.</u></p> <p>제5조 약관의 적용</p> <p>① <u>예금주와 은행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들 때에는 그 합의사항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u></p> <p>② <u>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u>예금거래 기본약관</u>, <u>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u>, <u>거치식예금약관</u>, <u>적립식예금약관</u> 및 <u>외환거래기본약관</u>이 적용되며,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u></p>	<p>운용기준 명확화 및 구 하나은행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내용과 일치</p> <p>개별약정 우선조항 신설</p> <p>조내용 변경 구 외환은행 삭제</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외화보통예금</p> <p>제6조 이자</p> <p>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u>네째주 토요일</u>에 계산하여 다음날 (이하 “<u>원가일</u>”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외화당좌예금</p> <p>제7조 ~ 제9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외화정기예금</p> <p>제10조 ~ 제12조(생략)</p> <p>제13조 (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외화보통예금</p> <p>제6자 이자</p> <p>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u>셋째주 금요일</u>(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이하 “<u>기준일</u>”이라 한다)에 셈하여 기준일의 다음일(이하 “<u>원가일</u>”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p> <p>②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외화당좌예금</p> <p>제7조~제9조(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외화정기예금</p> <p>제10조 ~ 제12조(현행과 동일)</p> <p>제13조 약관의 변경</p> <p>① <u>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u></p> <p>② <u>제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③ <u>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④ <u>이용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u></p>	<p>구 하나은행과의 결산일 일치</p> <p>신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의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 약관의 적용 ① (생략) ② 외화예금거래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약관에서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하나은행), 거치식예금약관(구 하나은행),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환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이 적용되며,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div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외화보통예금</div> 제6조 이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 6 월, 9 월,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조 ~ 제4조 (현행과 동일) 제5조 약관의 적용 ① (현행과 동일) ① 외화예금거래에는 외화예금 종류별 특별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u>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 및 외환거래기본약관</u> 이 적용되며, 외화예금 취급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 등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및 감독기관이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div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외화보통예금</div> 제6자 이자	구 하나은행 삭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2 월의 셋째주 금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셈하여 기준일의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p> <p>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u>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로</u> 셈한다</p>	<p>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셋째주 금요일(단, 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이하 “기준일” 이라 한다)에 셈하여 기준일의 <u>다음일</u>(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p> <p>② 이 예금의 이자는 처음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u>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은행이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로</u> 계산합니다.</p>	<p>용어 통일</p> <p>용어 통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외화당좌예금</p> <p>제7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 변제 총당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 (신설) <p>제8조 (생략)</p> <p>제9조 준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 잔액·거래명세정리,해지, 해지후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하나은행)” 제3조, 제5조, 제7조내지 제13조를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외화당좌예금</p> <p>제7조 지급특례 은행은 예금주의 수표·지급청구서 없이 이 예금을 예금주의 은행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무 변제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동일) <u>수입어음원금, 외화표시 내국신용장결제대금, 수출환어음 및 외화수표부도대금</u>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채무 <p>제8조 (현행과 동일)</p> <p>제9조 준용 수표용지교부, 수표금지급과 지급위탁취소, 수표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잔액·거래명세 정리, 해지, 해지후 처리는 “<u>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u>”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합니다.</p>	<p>구 외환은행 약관과 용어 통일</p> <p>신설</p> <p>조항 변경 및 구 하나은행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외화정기예금</p> <p>제10조 이자</p> <p>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이 예금의 만기후이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및</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외화정기예금</p> <p>제10조</p> <p>① <u>이 예금 이자는 약정한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일 당시 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외화정기예금이율의 가입기간 해당 이율로 계산하여 만기일 이후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 예금은 예금주의 선택에 따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주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합니다.</u></p> <p>② 예금주가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예치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u>가입일 당시 약정이율</u></p>	<p>표현구체화 및 용어 통일</p> <p>이자지급식 상품 구체화</p> <p>만기후 적용이율 구 외환은행 기준으로 통일</p>

현행	개정(안)	비고
<p>매월 만기 <u>응당일의 「7일미만 외화정기예금 고시이율」을 적용하며 매 1개월마다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해당고시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의 고시이율을 적용한다</u></p> <p>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 청구할 때는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중도해지이율로 선택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다</p> <p>1. ~ 4. (생략)</p> <p>5. 6 개월 이상 : 매 6개월까지는 약정이율 적용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전1호 내지 제4호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p>	<p><u>의 3/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u></p> <p>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을 청구한 때는 가입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p> <p>1. ~ 4. (현행과 동일)</p> <p>5. 6 개월 이상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6/10 다만, 365일 이상인 경우 약정이율의 8/10</p>	<p>중도해지이율 구 외환은행 기준으로 통일</p>
<p>제 11조 (신설)</p>	<p>제11조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과 이자</p> <p>① <u>이 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가입 기간보다 긴 가입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0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음 가입일로부터 계약변경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u></p> <p>② <u>계약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이자는 변경전 처음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u></p>	<p>구 외환은행 약관과 통일</p>
<p>제 12조 (신설)</p>	<p>제12조 가입기간의 갱신과 적용이율</p> <p>① <u>이 예금은 예금주가 예금 개설시 또는 만기일 이전/이후에 가입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에 전과 동일한 기간 또는 예금주가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자동갱신 처리합니다.</u></p> <p>② <u>갱신된 예금의 이율은 갱신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제 10조에 따라 적용이율을 정합니다.</u></p>	<p>구 외환은행 약관과 통일</p>
<p>제13조 (신설)</p>	<p>제13조 약관의 변경</p> <p>① <u>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u></p>	<p>약관의 변경 내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u>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u></p> <p>② <u>제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③ <u>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u></p> <p>④ <u>이용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의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u></p>	<p>신설</p>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외환거래기본약관』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외환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p> <p>제 1 조- 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하나은행)]을 따르기로 합니다.</p> <p>제 8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변경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변경전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으로 변경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거래처가 제 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상품명: 『외환거래기본약관』</p> <p>제 1 조- 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준용규정) 신청인과 은행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국제상업회의소의[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전자무역업무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p> <p>제 8 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 ② 제 1항의 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제 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 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 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가 제 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상품명 변경</p> <p>(구 하나은행) 삭제</p> <p>(약관의 변경) 일부 표현 수정</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외화송금서비스 이용 약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외화송금서비스」이용약관 (구 외환은행)</p> <p>제1조 (생략)</p> <p>제2조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의 범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은행이 발급한 “한가죽현금카드(구 외환은행)”, “신용카드”등 현금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3조 ~제10조 (생략)</p> <p>제11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외환은행)”, “현금카드이용약관(구 외환은행)”, “직불카드회원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릅니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외화송금서비스」이용약관</p> <p>제1조 (현행과 동일)</p> <p>제2조 (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의 범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 “신용카드”등 현금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3조 ~제10조 (현행과 동일)</p> <p>제11조 (준용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u>외환거래 기본약관</u>”. “<u>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u>”, “<u>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u>”, “<u>현금카드이용약관</u>”, “<u>직불카드회원약관</u>”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릅니다.</p> <p>제12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구 외환은행) 삭제</p> <p>명칭변경 및 구 외환은행 삭제</p> <p>구 외환은행 삭제 약관명 통일</p>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환전예약서비스』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환전예약서비스』(구 외환은행)</p> <p>제 1 조 (기재생략)</p> <p>제 2 조(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의 범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은행이 발급한 “한가족현금카드 (구 외환은행)”, “신용카드” 등 현금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 3 조~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외환은행)”, “현금카드이용 약정서(구 외환은행)”, “직불카드회원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릅니다.</p> <p>신설</p>	<p>상품명: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환전예약서비스』</p> <p>제 1 조 (기재생략)</p> <p>제 2 조(서비스 이용 가능 카드의 범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은행이 발급한 “현금 IC 카드”, “신용카드” 등 현금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 3 조~제 6 조 (기재생략)</p> <p>제 7 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이용 약정서”, “직불카드회원약관” 및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릅니다.</p> <p>제 8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한가족현금카드 ->현금IC카드 변경</p> <p>(구 외환은행) 문구 삭제</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

『주문형 환율예약 서비스 약정서』 개정대비표

1. 개정시행일 : 2016. 06. 07

2.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상품명: 『주문형 환율예약 서비스 약정서』(구 외환은행)</p> <p>제 1 조- 제 2 조 (기재생략)</p> <p>제 3 조 ①~③ (기재생략) ④ 원화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중 2 계좌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화계좌는 외화보통예금, 외화당좌예금, 외화정기예금(HiFi 2000 자유적립외화예금, HiFi Plus 외화적립예금,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외화양도성 정기예금, 환율안심외화정기예금은 제외합니다.) 중 각 외화통화당 2 계좌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정기예금은 외화매입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⑤ (기재생략)</p> <p>제 4 조~ 제 8 조 (기재생략)</p> <p>제 9 조 (준용규정) 본인과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외환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구 외환은행)”,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구 외환은행)” 및 “외국환거래법규” 에 따릅니다.</p> <p>신설</p>	<p>상품명: 『주문형 환율예약 서비스 약정서』</p> <p>제 1 조- 제 16 조 (기재생략)</p> <p>제 3 조 ①~③ (기재생략) ④ 원화계좌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당좌예금 중 2 계좌 이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외화계좌는 외화보통예금, 외화당좌예금, 외화정기예금(HiFi Plus 외화적립예금, 자녀사랑 외화로 유학적금, 외화양도성 정기예금은 제외합니다.) 중 각 외화통화당 2 계좌이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화정기예금은 외화매입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p> <p>⑤ (기재생략)</p> <p>제 4 조~ 제 8 조 (기재생략)</p> <p>제 9 조 (준용규정) 본인과 은행은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외환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외국환거래법규” 에 따릅니다.</p> <p>제 10 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 조를 적용(준용)합니다.</p>	<p>상품명 변경</p> <p>HiFi 2000 자유적립 외화예금, 환율안심 외화정기예금 삭제 (상기 외화예금 상품 폐지)</p> <p>(구 외환은행) 문구 삭제</p> <p>약관의 변경 문구 신설</p>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 비적용